

- 《오리고기 201톤 수출
- 《오리가격 오름세로 지속
- 《국내 최대 부화장 2개
화인코리아에 매각
- 《지난해 종오리 수입량 격감
- 《중국산 오리고기 660톤 반송조치

- 《오리고기 수입량 6,738톤 수입
-전년대비 170% 증가
- 《지난해 오리바합사료 생산
-전년동기대비 12% 증가
- 《도축장 위생관리기준 강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
- 《오리고기 수출감역 수입국
-요구조건에 따라 감역방침

오리고기 201톤 수출

지난해 일본으로 수출된 오리고기는 총 201톤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본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5일 오리고기 10톤이 일본으로 수출된 데 이어 지난 연말까지 3개 업체에서 201톤의 오리고기를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전남 나주의 화인코리아가 122.6톤, 75만불어치를 수출하여 가장 많았으며 전북 정읍의 혜성농산이 73.67톤, 36만4천불어치, 충북의 모란식품이 5톤, 2만5천불어치를 수출 총 수출금액은 1백13만9천불에 달했다.

이와 같이 지난해 짧은 기간동안 많은 양의 오리고기가 수출된 것은 일본의 오리고기 주요 수입국인 중국산 오리고기에 대해 위생문제를 들어 지난해 6월 취한 수입중지조치를 풀지 않은데다 국내 산지오리가격 하락에 따라 수출에

의한 부가가치가 높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국내 오리고기 주요수출업체들은 화인코리아의 경우 이미 올 3월까지 3백50톤의 수출계약이 완료된 상태이고 혜성농산의 경우도 연간 수출계약이 이뤄진 상태라고 밝혀 올 수출물량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오리가격 오름세로 지속

산지오리가격이 회복세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일 조사된 산지오리가격은 중부권이 수당 4천원에서 4천2백원선에 출하일령은 43일령에서 46일령 내외에서 출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호남지역 역시 지회고시가격인 수당 4천2백원선을 회복한 가격에서 출하일령은

중부권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산지오리가격 시황은 종전시세에 비해 출하일령은 3~4일 앞당겨진 일령이고 수당 가격은 2백원선 높아진 가격이다. 산지오리가격이 지난해 12월 10일을 전후로 오름세로 반전된 후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연말을 전후로 한 소비가 다소 나아진데다 겨울철 사육기피현상에 따른 사육량이 다소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광주전남도지회 운영이사회는 지난 11일 산지육용오리 가격을 14일부터 종전에 비해 3백원 인상한 4천5백원, 새끼오리가격은 21일부터 7백원으로 종전에 비해 1백원 인상기로 함에 따라 산지 육용오리 및 새끼오리가격의 오름세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최대 부화장 2개 화인코리아에 매각

국내 최대의 새끼오리를 생산하던 화천부화장 및 미르네농산이 지난해 12월 중순 화인코리아에 매각된 것으로 나타나 오리업계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화인코리아는 지난 23일 충남천안에 소재한 화천부화장 국내 새끼오리생산 1위 업체와 경기도 여주에 소재한 미르네농산 국내 새끼오리생산 2위 업체를 인수하여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화인코리아는 12월말까지 모든 인수절차를 마치고 오는 1월부터 부화장 인수에 따른 경영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로서 화인코리아는 새끼오리 생산, 위탁사육, 도축, 유통에 걸친 완전 수직계열화체계를 구축한 국내 최초의 업체로 부상해 국내 오리고기 생산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체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화인코리아는 이번 국내 최대의 부화장 2개소를 인수함으로써 생산비 절감에 의한 국제 경쟁력이 한층 높아지는 동시에 오리고기 수출 경쟁력도 중국에 비해 1.5배 수준으로 낮출 수 있어 안정적인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새끼오리 품질향상과 안정적인 수급 조절에 의해 계열화사업이 한층 활성화되는 이외에 국내 오리가격안정에 의한 수입억제 효과 등 이번 부화장 인수에 따른 국내 오리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종오리 수입량 격감

품질 좋은 새끼오리 생산을 위한 종자용 오리수입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집계한 지난해 종오리 수입량은 20,250수로 전년동기 수입량 44,413수에 비해 55%내외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별로는 프랑스 2건에 13,230수로 수입금액은 102,384불이었으며 영국에서는 4건에 7,020수로 89,673불 어치에 그쳤다. 이와 같이 지난해 종오리 수입량이 줄어든 것은 지난 2월 화천부화장이 상업용 육용오리 생산을 위한 종자용 GPS를 도입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종자용PS 수입을 크게 줄인 데다 독일에서 종자용 종오리를 수입해 오던 미르네 부화장은 지난해 종자용 종오리 수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지난해 수입된 종자용 종오리는 기존 부화장은 수입량을 줄인 반면 신규로 새끼오리 생산을 위한 부화장이 종자용 종오리 수입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산 오리고기 660톤 반송조치

지난해 6월 중국산 오리고기에서 가금인플루엔자 검출에 따른 수입중단조치로 정부가 반송 처리키로 한 물량 중 6백60톤이 반송 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지난해 12월 24일 밝힌 중국산 오리고기 반송조치에 따르면 지금까지 반송 조치된 오리고기는 전체 반송처리 대상물량 1,066톤 중 62%에 해당하는 660톤이 반송 조치됐다고 밝혔다. 이 반송 조치된 물량 중 23.8톤은 유통 중 회수된 물량이 포함된 양이며 남아있는 물량은 406톤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해 6월 정부가 반송 조치한 이후 반송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조속한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갈 것이라며 검역업무에 대한 이해와 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오리고기 수입량 6,738톤 수입

-전년대비 170% 증가

지난해 오리고기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집계한 자료

지난해 오리배합사료 생산
-전년동기대비 12% 증가

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수입된 오리고기는 총 6,738톤으로 전년동기 수입량 3,960톤 대비 17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별로는 중국에서 전체 수입량의 76%에 해당하는 5,129톤이 수입되었으며 태국은 전체수입량의 22%에 해당하는 1,471톤, 미국은 2%인 135톤, 프랑스는 2톤에 그쳐 아주 미미한 양이 수입된 것으로 분석됐다.

금액상으로는 총 9백84만2천불 어치로 한화 기준환율 1,250원시 1백23억원 어치가 수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별로는 중국이 6,618,527불로 kg당 수입가격은 1.29불선(1,612원), 태국은 2,617,757불로 kg당 1.78불선(2,225원), 미국은 552,114불로 kg당 4불선(5,095원), 프랑스는 53,822불 어치로 kg당 2.59불선(3,249원)에 수입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같은 수입가격은 전년동기에 비해 태국은 비슷한 수준, 중국은 약 14% 하락한 가격으로 중국산 오리고기의 수입가격이 내려간 것은 2천년의 경우 수입량의 대부분이 정육이 차지한 반면 지난해의 경우 통오리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오리배합사료 생산량이 전년대비 12%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오리배합사료 생산량은 26만9천3백46톤이 생산되어 전년도 생산량 24만1백33톤에 비해 12% 증가된 것으로 집계됐다. 품목별 생산량은 어린오리 3만6천3백68톤, 육용오리 15만6천9백51톤, 육성오리 5만1천3백11톤, 산란오리 2만4천7백16톤 등이 생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증감율에 있어 육성오리 생산량이 전년대비 5% 감소하였으며 육용오리, 산란오리, 어린오리는 22%, 15%, 1%가 각각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한편 지난 4/4분기 배합사료 생산량은 총 6만6천2백97톤이 생산되어 전분기 대비 13.4%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어린오리가 7천7백68톤이 생산되어 전분기 대비 12% 감소한 반면 육용오리 4만68톤이 생산되어 전분기 대비 25%, 육성오리 1만2천7백29톤이 생산되어 전분기 대비 10%, 산란오리 5천7백32톤이 생산되어 전분기 대비 2% 각각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도축장 위생관리기준 강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

도축장의 위생관리기준 강화 및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등의 영업허가 및 신고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이양되고 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이 대폭 강화된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지난 12월 31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법제 8조 위생관리기준에 있어 농림부장관은 도축장, 축산물가공장의 영업자 및 종업원이 지켜야할 위생관리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도축장, 축산물가공장의 영업자는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당해 작업장 및 영업자 및 종업원이 지켜야할 자체 위생관리기준을 작성 운영토록 하고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법에 명시됐다. 또 제9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역시 농림부장관은 축산물의 원료관리, 처리, 가공 및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

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여 이를 고시토록 하고 도축장, 축산물가공장의 영업자는 이 기준에 따라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하여 운용토록 했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도서지역에 있는 도축업 영업자의 경우는 예외됐고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토록했다.

법제 22조 영업의 허가는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종전대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축산물보관업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개정됐다. 또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등 사업자의 영업신고, 휴업, 재개업, 폐업 등 허가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역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개정됐다.

법위반자에 대한 벌칙강화내용을 보면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 처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가축의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 도살 처리하는 가축에 대하여 검사원의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도축업 등의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됐다. 또

도축 처리된 식육에 대한 검사나 자체검사원의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비 규격용기의 사용, 도축가공기준 및 규격위반시는 3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이하의 벌금 등이다.

**오리고기 수출검역 수입국
-요구조건에 따라 검역방침**

일본으로 수출되는 오리고기에 대한 검역이 종전과 같이 수입국요구조건에 따라 수출검역이 이뤄지게 된다. 농림부는 지난 3일 가금육의

홍콩수출작업장 HACCP 적용과 관련한 공문에서 오리고기 등 기타 가금육 수출작업장은 아직 국내법상 HACCP모델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종전과 같이 수입국 요구조건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라고 관계기관에 시달했다.

이로서 오리고기를 수출하려는 사업자는 HACCP 시설에 관계없이 도축장에 대한 수출작업장 지정을 요청하여 수출검역을 시청할 수 있어 수출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의 수출이 활성화 될 수 있게 됐다.

